

社會福祉 서비스의 長期展望

張 仁 協

〈서울大 社會事業學科 教授〉

目 次

- | | |
|--------------------|-------------------|
| I. 序 | V. 心身障礙者福祉 서비스 |
| II. 兒童 및 靑少年福祉 서비스 | VI. 社會福祉 서비스의 諸原則 |
| III. 老人福祉 서비스 | VII. 社會福祉 行政 組織 |
| IV. 婦女福祉 서비스 | VIII. 社會福祉 人力 |
| | IX. 結 |

I. 序

急激한 社會, 經濟的 變動은 새로운 社會問題나 諸要求를 派生케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家族의 變動이나 人口의 移動性, 人口統計學上的 問題(出生率, 結婚, 老齡者 增大 등) 또는 心理的 社會的 不安 등은 새로운 社會福祉 서비스의 課題를 提起케 해 주고 있다. 더욱 長期的 展望에서 社會福祉 서비스의 體系確立이 要請되고 있어 本稿에서는 尙後 約 15年間에 이르는 社會的 서비스를 展望해 보고자 한다.

本研究에서 社會福祉라는 用語를 다음의 범주로 使用코자 한다.

우선 社會福祉를 國家開發計劃의 諸社會部門中的 한 領域으로 간주코자 한다.

또한 社會保障 構成體系에서

1. 社會保險
2. 公的扶助
3. 社會的 서비스들을 包括하고 있는바 第3의 內容에 焦點을 두었다.

社會的 서비스의 對象으로서

1. 兒童 및 靑少年
2. 老人
3. 婦女子
4. 心身障礙者를 選定하였으며

이들에 對한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의 傳達體系나 그 要員의 專門化등을 부가해서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더욱기 內容의 展開過程에서는 上記 集團에 對한 問題의 背景이나 現況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政策目標을 設定함과 아울러 그 目標達成을 爲한 具體的 政策手段이나 課題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II. 兒童 및 靑少年福祉 서어비스

1. 兒童 및 靑少年 人口推計

表 (1)

단위 : 천명

연도	76	77	81	86	91	비 고
인구						
총 인 구	35,860	36,436	38,807	42,088	45,251	
14세 미 만	12,513 (34.9)	12,355 (33.9)	12,093 (31.2)	12,020 (28.6)	12,617 (27.9)	아 동
15~24세	7,828 (21.8)	8,170 (22.4)	8,906 (23.0)	8,859 (21.0)	8,614 (19.0)	청 소 년
계	20,341 (56.7)	20,525 (56.3)	20,999 (54.2)	20,877 (49.6)	21,231 (46.9)	

資料 K. D. I. 1977

兒童과 靑少年 人口는 점차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1991년도까지에도 아직도 全體人口의 半數를 거의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對한 福祉서어비스는 매우 重要한 것으로 展望된다.

1) 兒童問題性格의 變化와 擴大

오늘날 産業化나 都市化의 進展에서 야기되는 家族의 問題나 母의 就業의 增大, 教育이나 취업의 機會의 制限, 有害매스컴 또는 各種 事故 發生등은 兒童들의 健전한 성장과 발달을 가로막는 要因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兒童問題의 性格에도 많은 變모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表 (2) 부랑아 문제 요인별 분석

내 용	인 원	%	내 용	인 원	%
부 조 사 망	699	9.2	취 직	810	10.6
부 모 유 기, 무 관 심	1,199	15.7	교 우 불 랑	345	4.5
부 모 행 방 불 명	519	6.8	학 교 문 제	296	3.9
이 혼	220	2.9	성 격 결 함	175	2.3
과 잉 간 심	558	7.2	지 체 장 애	138	1.8
재 혼	156	2.1	허 영 실 성	523	6.9
계 부 모 불 화	1,092	14.3	부 랑 성	314	4.1
성 환 고	584	7.6	계	7,627	100

資料 서울시립아동상담소, "현황", 1977.

表(2)에 의하면 相談對象兒童의 問題의 要因을 大體로 6類型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家庭的 환경 58.3 (%)

經濟的 요인	18.2
人格的 요인	13.3
敎育의 문제(知能)	3.9
건강문제	1.8
社會的 영향	4.5

물론 上記 要因中 복합적으로 作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先進諸國의 문제의 性格과 유사해 감을 示顯해 주고 있다. 즉 經濟的, 건강상 문제에서 家庭的, 情緒的 問題의 性格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兒童福祉 問題發生狀況을 보면 (表 3) 부랑아(家出兒), 非行少年 數는 增加一路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 兒童問題의 發生狀況

단위 : 천명

년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아동							
기	아	5,525	6,211	5,941	5,935	7,347	6,631
	부랑아(가출아)	20,596	19,367	13,344	9,997	14,336	13,261
교	아	1,980	1,661	2,500	1,540	1,955	2,170
비	행 소 년	39,338	45,469	44,526	49,522	59,045	66,433

資料 保健社會部統計年報 1976年
非行少年은 內務部 提供 1976年

앞으로는 孤兒問題보다는 家庭을 이탈한 부랑이나 非行問題兒童이 증대될 것으로 豫見된다.

2. 問題現況

兒童福利施設現況을 볼 때 (表4) 아직도 嬰育兒의 일반시설이 지배적이며 부랑아(情緒障得兒)나 不具兒施設은 多年間 변화없이 정체상태에 있다.

○棄兒나 孤兒의 入養은 1975年 末까지는 國外入養이 위주가 되어 왔었으나 1976年부터 國內入養으로 政策轉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事業의 積極적인 遂行에는 많은 어려움이 介在되고 있다.

○ 1976年에 시작한 政府主導의 結緣事業은 金錢給付的인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兒童들의 人格的 (정서적) 서비스 및 施設의 영세성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 1976년도부터 추진된 "年長兒童 직장주기 운동"도 많은 實效를 거두고 있으나 施設兒童들의 施設病的 要素와 職業的 訓練이나 技能習得의 機會의 缺如로 새로운 직장에서의 不適應문제는 앞으로 研究검토해야 할 문제들이다.

○ 非行少年들의 수는 해마다 增加一路에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정사업은 여전히 法的收容保護的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問題解決의 方向을 시급히 모색해야 하겠다.

表 (4)

아동복지시설

시도별	구분	총계		영아		유아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417	39,844	36	3,512	307	27,89
서울		60	7,566	5	891	41	3,99
부산		48	5,152	5	498	34	2,98
경기		68	4,808	4	295	50	93,5
강원		12	1,010	7	137	10	87
충북		15	933	2	50	6	40
충남		39	3,791	2	216	31	2,86
전북		20	1,912	4	276	13	41,48
전남		43	4,983	3	282	32	4,06
경북		61	5,429	4	446	50	4,30
경남		44	3,350	5	421	34	2,61
제주		5	625			5	62
국립		2	343			1	12

資料 保社部 "主要業務指標" 1977年

용되어야 할 領域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未開狀態이며 既存의 施設도 大部分 改善이나 擴充이 요망되고 있는 實情이다.

3. 政策目標

- 1) 救護的 事業 爲主에서 豫防的 事業으로 전환한다.
- 2) 普遍的 接近과 選定的 接近의 兩面을 補完的으로 活用한다.
- 3) 物質爲主 서어비스에서 퍼어스넬리티(personality)나 情緒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專門相談 서어비스를 강화한다.
- 4) 現代社會에 適應할 수 있도록 勞動力을 育成하는 서어비스를 強化한다.
- 5) 어떤 特定한 서어비스의 集中에서 탈피하여 서어비스를 多樣하게 그리고 包括的이며 總體的으로 제공한다.
- 6) 專門機關이나 專門人力을 活用하여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서어비스를 제공한다.
- 7) 地域性を 重視하는 komuniti 케어(Community Care) 서어비스를 권장한다.
- 8) 兒童들의 건전한 成長 發達을 도모할 수 있는 여가 善用을 위한 오락 活動 프로그램이나 서어비스를 적극 개발한다.

4. 政策手段

1) 施設的 事業爲主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家族에 대한 豫防事業을 重視한다. 그 서어비스의 內容으로

ㄱ. 居宅保護와 居宅的 서어비스의 제공

ㄴ. 家族福祉 서어비스

ㄷ. 代理家庭保護制度의 強化

(1) 入養

(2) 家庭委託保護

(3) 集團家庭委託保護(그룹홈 (group home) 養育家庭센터)

2) 지금까지 兒童 및 靑少年福祉分野는 특별한 개인이나 家族 또는 일부 특수대상만을 위한 補完的事業을 위주로 해 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全體 兒童을 대상하는 制度的, 機能的 事業도 一例를들어 教育, 保健, 娛樂活動 등을 一병행해서 수행한다.

3) 兒童 및 靑少年 복지 서어비스의 기본이 되는 相談機能을 강화하기 위해서 相談施設이나 機關을 全國的으로 설치한다. (現在의 市道에서 區郡單位까지 擴大)

4) 兒童 및 靑少年 특히 不遇靑少年들을 疎外對象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이들을 國家發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人力으로 育成한다. 따라서 各 社會福祉機關이나 시설에서는 職業교육이나 職業보도 및 職業알선 서어비스를 적극 개발한다.

5) 지금까지의 施設을 中心한 兒童福祉事業에서 앞으로는 家族保護와 地域社會的 保護를

6) 所要되는 각종 施設을 확충하고 新設한다. 즉 기존 시설을 企劃整備하며 一般 育兒施設은 특수시설로 전환하여 施設事業의 質的 變化를 가져오며 不足施設은 擴充함과 아울러 通院施設 活用제도도 수립한다. 託兒施設도 年次的으로 增設하여 對象全員을 收容한다. 現在로는 41個所의 障害施設에 3,600여명이 收容中인바¹⁾ 이들에게 특수보조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輕症障害者는 通院施設을 利用하며 重症障害者는 1991년까지는 全員 收容보호한다.

7) 1975年 현재 兒童福利要員은 273명인 바 이들은 臨時職으로서 待遇가 未洽하여 效果的으로 事業을 遂行하지 못하는 實情이다. 이들에게 正規職으로서의 地位와 專門職으로서의 待遇가 따라야 한다.

8)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社會福祉對象이 되는 처우를 施設에서보다는 가능한 한 地域內에서의 諸般 서어비스로 代置코자 하는 保護이다. 地域 社會 行政體는 各兒童의 欲求를 充足하기 위해 地域社會資源의 利用과 敎育, 보건, 경찰 등의 관련 分野와의 긴밀한 協同 아래 모든 서어비스를 住宅에서 活用하게 한다.

9) 끝으로 兒童 및 靑少年들의 여가나 오락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普遍性이나 豫防性的의 原理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미개척 상태이며 기존의 시설도 대부분 改善이나 擴充이 요망되고 있는 實情이다. 兒童들을 위한 여가나 오락은 生活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으며 兒童의 成長에 重要한 營養원(營養源)인 것이다. 오락이나 유희에 의해서 아동들은 全人的 發達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餘暇善用의 方途와 오락 활동의 기회를 充分히 제공함으로써 兒童 및 靑少年의 成長과 發達에 萬全을 기해야 하겠다.

1991년까지 各洞이나 마을마다 어린이 놀이터 1個所씩 또한 市, 區, 邑, 面마다에는 兒童館 1個씩을 설치하며, 靑少年들을 爲한 社會館, 유스호스텔, 캠프場 등의 施設을 全國的으로 擴充 新設하여 모든 兒童 및 靑少年들이 건권하게 成長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確立해야 할 것이다. 要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兒童 및 靑少年 서어비스는 主로 施設中心의 경향이 었다.

施設兒童을 主對象으로 하여 結緣을 맺고 職場을 주고 入養에 重點을 두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兒童問題性格의 變化나 擴大에서 오는 諸欲求를 充足하기 위해서는 多樣한 새로운 서어비스를 개발해야 하겠다.

따라서 1991년까지에는 施設的 서어비스 爲主에서 家庭的(居宅的), 地域社會的 保護(Community Care) 서어비스까지를 統合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體系를 確立해야 하겠다.

1) 保健社會部, “主要業務指標”, 1977年, p. 77

Ⅲ. 老人福祉서비스

1. 老人의 問題

1) 老齡人口의 增大

다음의 表(5)에서 볼 수 있듯이 老齡人口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65歲 以上の 人口比가 1976년에 總人口의 3.5%에서 1991년에는 5.0%로 增大될 것이며 이와 같은 老齡人口의 增大는 그만큼 老人問題의 擴大나 變化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表 (5) 老齡人口 推計 단위 1,000명

연령 \ 년도	1976	1977	1981	1986	1991	비 고
총 인 구	35,860 (100)	36,486 (100)	38,807 (100)	42,088 (100)	45,251 (100)	() 내는 %
55~64세	1,494 (4.2)	1,768 (4.9)	2,024 (5.2)	2,395 (5.7)	2,955 (6.5)	
65세 이상	1,264 (3.5)	1,311 (3.6)	1,532 (3.9)	1,836 (4.4)	2,270 (5.0)	
계						

資料 K.D.I. 1976年

2) 高齡人口의 增加

平均壽命이 延長됨에 따라 高齡人口의 수가 增大되고 있다. 平均壽命은 1961年 57.5歲에서 1971年에 61.9歲, 1981年에 69.9歲에 이를 것이며 1991년에는 70歲를 훨씬 넘을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러한 高齡者의 增加는 病弱한 老人이나 保護對象者의 增加를 의미한다고 보겠다.

(表6參照)

表 (6) 平均壽命

연도 \ 구분	平 均	男	女
1961	57.5	54.5	60.6
1966	61.9	59.7	64.1
1971	65.9	63.7	68.1
1976	68.4	66.2	70.6
1981	69.9	67.7	72.1

資料 경제기획원, 주요통계, 1972

3) 身體 및 精神疾患(老人性 疾患)

1970년에 실시한 健康調査에 의하면 老人의 罹患率은 全國平均 40%의 높은 率을 보이고 農村의 경우는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身體的 疾患外에 精神的 疾患까지 포함한다면 그 比率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이 老人의 精神疾患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 疾患들을 적절히 보살필 수 있는 의료시설이나 의료요원의 確保나 또한 社會福祉的 서서비스가 거의 缺如된 상태이다.

다음의 (表 7)에서 보듯이 1991년에는 老人性 疾患者의 數가 90萬名을 넘을 것으로 推算된다.

表 (7) 老人福祉對象의 趨勢表 單位 1,000명

구분 \ 연도	1976	1977	1981	1986	1991
65歲 以上	1,264	1,311	1,532	1,836	2,270
治療對象(老人人口의 40%)	506	524	612	734	908
收容保護對象(老人人口의 0.6%)	7.6	7.9	9.2	11.0	13.6

資料 保健 및 社會保障實務計劃班, 保健 및 社會保障部門計劃 1976

4) 經濟 및 社會變動

經濟的 側面에서 볼 때 老人의 問題는 收入의 中斷에 있다. 老齡 經濟活動의 人口는 年齡의 進展과 더불어 현저하게 감소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65歲 以上 人口中 經濟活動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는 平均 約 17% 內外로서 近 80% 以上の 老人들이 產業社會에서 疎外되는 現象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表8參照) 社會的 側面으로는 特히 產業化 過程에서 오는

① 賃金을 中心으로 하는 經濟生活에 轉換

表 (8) 老人福祉對象者 推計 單位 1,000인

구분 \ 연도별	1976	1977	1981	1986	1991	비 고
1. 총 인 구	35,860	36,436	38,807	42,088	45,251	K. D. I 推計
2. 65세이상노인수	1,264	1,311	1,532	1,836	2,270	"
3. 경제활동참가노인수	214	222	260	312	385	참가율 17%(사보심조사)
4. 경제활동불참노인수	1,050	1,089	1,272	1,524	1,885	2-3
5. 거택보호대상노인수	164	170	199	238	295	노인총수의13%(사보심조사)
6. 요수용보호 대상수	7.6	7.9	9.2	11.0	13.6	총노인의0.6%(사보심조사)
7. 치료보호대상수	506	524	612	734	908	총노인의40%(사보심조사)

資料 KDI老齡人口推定과 社保審調査比率에 입각한 推計

2) 保健社會部, "社會保障審議委員會에서 實施한 健康調査", 1970

② 都市에로의 人口移動

③ 個人主義的 價値觀의 傾向으로 家族集團의 世代的 分化(核家族化)를 야기시키며 別居 老人의 增大등으로 家族의 老人扶養 機能이 弱화되어가고 있다.

現代家族制度下에서는 家族內에서나 社會에서의 地位나 役割의 喪失을 가져와 老人들의 情緒的 不安을 增大케 하고 있다.

5) 老人의 疎外問題

老人의 또 큰 問題는 上記 諸要因들르 因한 隔離와 孤獨의 問題이다. 이들의 孤獨은 社會적 疎외의 의미도 있겠으나 보다 정서적이고 內的 經驗에 의해서 생겨나는 所產物이다.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과 사망은 安定性의 平衡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운 平衡維持를 위한 代置方法이 거의 없기 때문에 孤獨은 加重된다.

이러한 狀況이 長期的으로 固定되어 精神病的 狀態에 빠지며 보다 自己中心的이고 利己的이며 先入見 등에 잡혀 他人과 疎遠하게 되어 외로움은 增加된다.

6) 老人福祉事業의 未成熟

① 1977年 現在 生活保護에 依하여 65歲 以上인 老人은 生計保護, 醫療保護 및 매장 조치의 보호를 받고 있다. 1976년 4月末 현재 이들의 數는 12만2천餘名이었고 全生保對象者의 약 38%를 점하고 있으며³⁾

② 全國에 44個의 養老施設이 있고 약 2,500名 程度가 수용되고 있으나 이들의 보호내용이나 기준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⁴⁾

③ 이밖에 民間團體나 一部 獨지가들의 노력에 의해 老人亭(2,864個所 會員數 420,505名) 老人會, 老人學校등이 있으나 財源面이나 시설面에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이다.⁵⁾

2. 老人福祉事業의 內容

1) 家庭保護

- ① 家庭에서 충분한 醫療와 看護 서비스를 받게 한다. (訪問看護制 채택)
- ② 家庭에서 關連되는 施設을 通院하면서 各種再活 서비스를 받게 한다.
- ③ 老人單獨世帯 老人夫婦世帯에는 家事援助 서비스를 주기 위해 家政婦派遣制度를 活用한다.
- ④ 老人 晝間委託保護制度를 確立한다. 즉 他家族成員에게 많은 보호를 要하는 老人에게 晝間에 委託保護를 받게 한다.
- ⑤ 特히 單獨이나 老夫婦世帯에는 一日一食 溫食配達制度를 活用하여 家庭에 居하게 한다.
- ⑥ 其他, 相談 서비스, 洗濯 서비스, 友愛訪問, 電話問安 서비스 등을 開發케 할 수 있다.

3) 하상락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老人問題" 세미나 발표논문, p. 380

4) 보건부 주요사업지표, 1977. p.70

5) 大韓老人會 調查發表, 1976年

이 바람직하겠다. 그 方法으로서

教育——學校教育, 社會教育을 통해 同居扶養을 강조

住宅——老親들과 同居 可能한 公共住宅의 建設

稅制——老人世帶를 모시는 家族에 대한 減稅措置, 醫療 서비스의 強化

2) 施設保護

人口의 老齡化와 더불어 家族의 核分化의 進展으로 別居老人의 數는 增加할 것으로 豫測되어 앞으로 施設保護의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老人福祉를 위해 필요한 施設로는

養老院(一般不遇, 無依託老人)

特別養老院(心身障碍로 特別保護를 要하는 老人)

有料養老院

老人福祉會館 등을 들 수 있겠다.

다음의 表(9)에서 볼 수 있듯이 各國의 老人收容率가운데 가장 낮은 0.6%를 적용하더라도 1991년에는 지금의 45個 施設에서 1,700個所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表 (9) 主要各國에 있어서의 老人施設의 收容狀況

國 名	年 度	收 容 者 數	65歲 以上人口에 對한 老 人 收 容 率
丁 抹	1963年	26,700人	5.3%
英 國	1963 "	277,011 "	4.5%
美 國	1963 "	609,960 "	3.7%
日 本	1972 "	90,500 "	1.2%
※韓 國	1976 "	7,600 " (2,441 ")	0.6%

資料 日本厚生省 社會局 調査 1950年

※ 韓國의 경우 收容保護對象人口를 老人人口의 0.6%로 잡고있으나 1976年末 實際收容者數는 2,441인에 불과하다.

그밖에 低額의 料金이나 或은 無料로 地域老人들에게 各種 서비스를 제공하는 老人福祉 Center를 1991년까지는 全國 各 郡, 區 單位에 1個所씩 設치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의료 서비스와 함께 휴양처를 제공해줄 수 있는 有料施設도 設치되어야 하겠다.

3) Community Care

社會福祉의 대상이 되는 老人들의 처우를 시설에서보다는 가능한 한 地域社會內에서 諸 般 서비스를 代置코자 하는 活動이다.

行政機關이 主體가 되고 其他 福祉機關이나 地域社會團體가 協助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① 居宅 서비스와 施設 서비스의 앞선

㉔ 地域 老人福祉 center 卞 老人 club 卞 運営

③ 教育, 學習, 娛樂, 休養, 保健, 社交, 奉仕 등 서어비스의 提供.

3. 政策目標

1. 居宅 서어비스 體系의 確立
2. 不遇老人의 경우 收容 서어비스 提供.
3. 心身의 健康維持를 위한 서어비스 體系 確立
4. 老人들을 위한 教育, 餘暇善用, 娛樂 活動의 體系確立
5. 老人들이 各己 소속한 地域社會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體系 確立.
6. 모든 老人들이 궁극적으로 居宅, 施設, 地域社會의 總合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傳達 體系 確立

○ 政策手段

1. 居宅 서어비스로는 生計扶助는 물론 의로 서어비스, home-maker 서어비스, day-care 서어비스, 相談 및 友愛訪問, 溫食 서어비스 등을 提供한다.
2. 收容 서어비스에서는 施設擴充 및 保護水準도 改善한다.
3. 老人이 心身 健康維持를 위해 老人檢診制度, 體育장려제도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教育이나 娛樂 서어비스를 위해 老人福祉館, 老人亭, 敬老堂을 설치 운영하며 특히 教育을 위해 老人學校를 권장한다.
5. 地方自治制의 行政을 中心으로 居宅 서어비스나 通院을 極大化함으로써 익숙한 地域에서 생활케 한다.

앞으로 점차 老人福祉 서어비스의 必要性은 增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現在로서는 미약한 부분적인 生活保護나 無依託老人의 施設的 保護를 除外하고는 老人福祉 서어비스란 거의 없다.

先進諸國에서는 主로 老人의 서어비스를 現代的 施設을 통해 提供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지만 근자에 이르러서는 可能한 限 自己의 居宅에서 自己가 익숙한 地域社會에서 보호를 받으며 生活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事實들이 立證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허약한 無의탁 不遇老人들의 施設的 서어비스의 充實을 期함과 同時에 앞으로는 居宅的 서어비스 體系의 完備와 커뮤니티 케어의 體系를 最大限으로 開發하여 이 모든 서어비스를 總合的으로 提供할 수 있는 體系를 確立해야 하겠다.

IV 婦女福祉서어비스

婦女福祉問題는 勞動에 종사하고 있는 婦女子의 福祉問題, 또한 未亡人, 未婚母, 淪落女性 등 이른바 要保護女性들을 위한 福祉問題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本計劃에서는 主로 要保護女性을 위한 서어비스 方案에 主眼點을 두고자 한다.

이들 要保護女性들은 生計, 健康, 子女養育, 情緒, 職場, 結婚, 住宅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國家나 民間團體들을 통한 諸般 서서비스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 1) 未亡人, 未婚母, 淪落女性에 대한 事業의 規模가 극히 微微한 狀態에 있다.
- 2) 施設中心의 保護事業에 치중하고 있다.
- 3) 서서비스의 內容이 對象人口의 欲求를 充足시키기에 不足하다.
- 4) 서서비스의 內容이 극히 事後對策的이며 豫防的 措置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5) 特히 未亡人 가운데 34個 母子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數는 1976年 12月 現在 800餘世帯 3,800餘名뿐이고 나머지 未亡人에 대해서는 體系的 保護 서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⁶⁾

表(10) 母子福祉 對象者 推計 단위 1,000인

구분	년도별					비 고
	1976	1977	1981	1986	1991	
총 인 구	35,860	36,436	38,807	42,088	45,251	KDI 總人口推計
총 가 구 수	7,172	7,287	7,761	8,417	9,050	가구당 5人으로 假定 추정
일반모자가구수	645	655	698	757	814	총가구수의 9%(보사부통계 1974년)
요보호자가구수	68	69	73	80	86	일반모자가구수의 10.6% (")
보호시설수용가구수	0.82	0.83	0.88	0.96	1.03	요보호모자가구수의 1.2% (")

資料 KDI 人口推計와 保社部統計(1974)比率에 입각한 推計

2. 불우여성(영세미망인, 미혼모, 윤락여성) 들에 대한 서서비스를 各各 分類하여 보면

- 1) 母子家庭을 위한 복지 서서비스
 - 母와 子의 生計扶助(거택보호)
 - 母子福祉施設(母子院, 母子복지센터 活用)
 - 母子福祉 生業資金의 貸付制度
 - 母子를 위한 취직 및 직장고용의 우선적 알선
 - 退院母子들의 定着事業 지원(住宅)
 - 院母들의 기술보도
 - 問題家庭에 대한 케이스워크(casework)의 서서비스
- 2) 未婚母를 위한 복지 서서비스
 - 의료보호 (産前 産後의 보호, 조산)

6) 保健社會部 “主要業務指標” 1977, 4, p. 80

○ 社會奉仕團體施設

○ 心理的相談(不安, 공포 갈등의 해소)

○ 施設的 서어비스(助産施設, 未婚母 그룹 홈)

○ 社會奉仕團體施設

3) 윤락의 未然 防止事業 적극추진

○ 家出에 對한 즉각적 조치

○ 직업보도나 技能의 훈련

○ 相談事業(가정 직업, 社會 心理등)

이와같이 專門家를 통한 社會 心理的 치료와 事後措置 서어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어비스등의 總合的 體系가 確立되어야 하겠다.

3. 政策目標

1) 問題發生(未婚母, 淪落女性)의 豫防的 서어비스에 중점을 둔다.

2) 未亡人과 그 가족을 보호함에 있어서 居宅保護를 원칙으로 삼는다.

3) 要保護婦女 對象人口의 實際 要求를 充足할 수 있는 각종 시설사업을 전개한다.

4) 婦女保護事業이 國家의 經濟社會開發 事業과의 關係性에서 推進되어야 한다. (女性 職業의 制限性이나 零細性에서의 脫皮)

5) 地域社會를 問題解決의 基盤으로 삼으며 地域社會의 參與를 적극 권장한다.

6) 專門人力을 통한 서어비스 傳達體系를 確立한다.

4. 政策手段

1) 一般婦女子를 위한 서어비스, 婦女教室, 市民大學, 各種 講座를 통해 教養을 높이는 活動을 強化하는 한편 既婚女性의 就業 增加 趨勢에 따라 託兒 및 保育등의 諸般 서어비스를 強化한다.

2) 居宅保護 서어비스

母子家族을 보호함에 있어 居宅保護를 원칙으로 삼으며 生業資金, 住宅資金, 融資, 就業 알선 등을 통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3) 婦女職業輔導施設의 強化

不遇女性들의 社會進出을 도움기 위해 職業輔導訓練을 推進하되 특히 大企業體나 國家機關이 관장하는 一般職業訓練 프로그램에 가담케 하여 現代產業技術과의 연계성을 갖게해야 한다.

5. 地域社會를 통한 서어비스

地域社會 行政主體가 中心이 되어 母子들의 居宅保護 서어비스 뿐만 아니라 未婚母를 위한 醫療保護(出産前後의 保護, 助産) 社會的 保護(生計, 教育, 就業, 結婚) 心理相談(不

性들에 대한 社會心理的 治療와 事後對策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 이러한 問題를 종합적으로 다룰 地域社會福祉會館의 設立, 또는 既存 機關의 서비스의 強化 및 多樣化가 마련되어야 한다. 要는 一般婦女子들의 보다 發展的인 生活을 위한 各種 서비스는 물론 既婚 就業女性들에 對한 託兒나 保育의 서비스들이 적극 제공되어야 하겠 으며 特히 不遇한 婦女子에 對한 經濟的, 就業的, 社會的 서비스들을 家庭이나 一時的 施設에서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도 自立 自活할 수 있는 機會를 造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V. 心身障礙者 福祉 서비스

1. 問題와 現況

1) 心身障礙者 問題는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變化, 增大하는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종전 의 先天的 경향에서 産業化나 都市化에서 오는 後天的 障害 즉 産業災害, 交通事故, 都市 公害等の 문제傾向을 나타내며, 그 量도 증대되고 있는것으로 推定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心身障礙者 福祉問題가 보다 큰 社會問題로 대두될 것으로 豫測된다.

2) 心身障礙者들이 基本的으로 갖는 問題는 障礙로 인한 現代社會의 生存手段인 勞動力 缺損問題인 것이다. 이것은 다시금 貧困問題를 派生케 하며 마침내 生活問題를 出現케 한다.

따라서 이들의 諸問題를 위한 福祉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하나 福祉對象 障害人口의 規模나 分類에 대한 實態과마조차도 미비하거나 不足한 現實임을 直시하지 않을 수 없다.

3) 障礙者의 治療나 再活을 위해서는 어떤 領域보다도 專門人力이나 資金 또는 막대한 設備器具들이 要請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要件들이 미비한 상태에 있으므로 서비스의 能率이나 效果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表 (11) 心身障礙者 對象者 推計 單位 1,000人

年度別 區分	1976	1977	1981	1986	1991	備 考
總 人 口	35,860	36,436	33,807	42,088	45,251	K, D, I 人口推計
(1) 身體障礙者數	494	502	535	580	624	總人口의 1.38%(1973年慈行會調查結果)
(2) 精神薄弱者數	179	182	194	210	226	總人口의 0.5% (" ")
障礙者總數 (1+2)	673	684	729	790	860	(1)+(2)
收容對象人員	47	47	51	55	59	總障礙者의 7% (" ")
治療對象人員	336	342	364	395	425	總障礙者의 50% (" ")
職業輔導對象人員	134	136	145	158	170	總障礙者의 20% (" ")

資料 KDI 總人口推計와 慈行會調查(1973年) 比率에 입각한 推計

心身障者 福祉法이 存立하지 못하고 있다.

4) 障者들에 대한 現存 施設保護에서는 施設數의 不足이나 職員 體制의 不充分 또는 職員이나 入所者의 劣等처우 등으로 施設의 營生성을 脫피하지 못하고 있다.

5) 끝으로 現在 우리나라의 心身障者 福祉事業을 보면 兒童障者 福祉事業과 成人障者 福祉事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의 收容實態는 극히 制限되고 있다.

表(11)에서 보면 收容對象의 心身障者 數는 1977년 47,000명으로 推算되는데 그 實態 收容者는 兒童 및 成人不具者를 통털어 7,000여명 정도로서 6분지1 정도에 못미치고 있다. 또 治療對象人員과 職業輔導對象者는 각각 34萬과 13萬名으로 推算되어 이 分野의 事業擴充도 긴급하다 하겠다.

2. 政策目標

- 1) 모든 心身障者들의 권익이 保障되어야 한다.
- 2) 모든 장애자들에게 적절한 治療나 再活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體系를 確立한다.
- 3) 장애자들의 各種 福祉施設을 수요에 맞도록 擴充해 나간다.
- 4) 이들에게 적절한 職業재활施策을 強化한다.
- 5) 장애자들의 生活問題 解決을 위해서 生業資金貸與制度, 生計扶助制度 및 장애자 우선 고용촉진제도 등을 마련한다.
- 6) 施設保護에서 居宅保護나 community care를 同時적으로 추진한다.
- 7) 다른 福祉分野보다 專門職人力이 絶실히 요청되는 分野로서 이를 통하여 心身障者들 問題解決의 機能을 수행한다.
- 8) 發生豫防, 早期發見, 早期治療對策을 중시한다.

3. 政策手段(事業計劃)

- 1) 지금까지의 施設保護 中心에서 居宅保護 및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總合적으로 제공한다.
- 2) 障者의 出現率을 全人口의 0.4%로 추계하고 있는 바 이들을 위한 治療, 再活을 위한 諸般 施設이나 設備를 擴充한다.
- 3) 現代的 의료시설과 教育시설 및 職業輔導施設들을 병설한 再活院을 설치하여 綜合적인 再活事業을 수행한다. (全國市道에 1個所씩)
- 4) 重症患者에 대해서는 全員收容保護태세를 갖추고 輕症장애자들에 대해서는 職業보도를 실시하여 취업을 적극 알선한다.
- 5) 心身障者本人 및 그 家族에 대하여 福祉事務所 등의 傳達體制網을 두어 各種 서비스를 받게 한다.

心身障礙者도 一般 모든 사람과 同一하다 라는 前提下에 서어비스 對象에서 疎外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에게도 經濟的 安定, 教育, 保健, 雇傭, 娛樂등의 諸서어비스를 적절하게 받음으로써 그만큼 有爲한 人間으로서 活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分野도 老人福祉分野와 같이 무조건 施設에 收容하는 서어비스 보다는 居宅的 서어비스 通院施設 및 커뮤니티 케어를 적절히 統合적으로 活用함으로써 보다 서어비스의 實効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VI. 社會福祉 서어비스의 諸原則

1. 서어비스의 統合性(Integration of Service)

社會福祉 對象者들 즉 兒童이나 靑少年, 婦女, 障礙者 및 老人 등은 모두 하나의 全體性을 띤 人間으로서 福祉와 關係되는 諸 要素들 가령 經濟的 安定, 教育, 保健, 勞動, 娛樂 등의 諸般 프로그램이나 서어비스가 統合적으로 相互 補完하여 이들에게 提供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教育部門은 教育內的 要素만을 강조하고 教育外的 要素를 등한히 하기 쉬우며 保健部門은 보건의적 요소만을 강조하고 生活福祉的 要素를 간과하기 쉬운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社會 反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統合的 原則은 行政 調整面에서 적용되어야 하겠다. 많은 部處들이 福祉對象 人口 集團에 대한 서어비스나 그 운영에 關係하고 있지만 各己 部處들이 그들의 소관사항에만 집착한다 할 때 部分的 側面的 解決은 가능하겠으나 包括的 欲求는 充足할 수 없으며 그 결과 問題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현재 兒童 및 靑少年들에 대한 統合的 調整 機構는 마련되고 있으나 障礙者나 老人들에 대한 統合적 서어비스를 위한 기구의 마련도 시급히 要請되고 있다.

서어비스의 具體的 統合化의 實例를 들자면 病院內에는 醫療社會事業 서어비스를, 學校內에는 學校社會事業 서어비스를, 住宅計劃에는 社會福祉 計劃官을, 地域社會開發事業에는 地域參與를 수반하는 各種 社會福祉 서어비스를, 또는 產業分野에서 모든 고용인들의 복지를 다루는 기구나 서어비스들이 提供될 수 있는 體制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要는 서어비스의 統合化라는 觀點에서 볼 때 서어비스들 問題 對象의 欲求에 따라 多樣化된 서어비스를 어느 한 서어비스에 치우침이 없이 統合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效率化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施設 爲主의 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居宅的 보호, 커뮤니티 케어 등이 統合됨으로써 施設 中心의 서어비스도 보다 效率化될 수 있는 것이다.

2. 서어비스의 制度化

社會福祉 서어비스는 包括的인 性格을 가졌고 아울러 普遍的인 서어비스의 경향도 띠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廣義의 社會福祉制度的(institutional)인 서어비스 즉 社會福祉의 制度化를 구축했으며 美國이나 日本의 경우도 그러한 方向으로 進行하고 있다.

이러한 福祉政策의 動向은 오늘의 變遷하는 社會구조가 補充的(residual)인 것에서 制度的인 서어비스에로 移行할 수 밖에 없는 狀況이기 때문이다. 補充性的의 普遍化가 급속도로 進行中에 있는 것이다.

家族制度的 變動은 가족의 扶養等 諸機能을 弱화시키고 있다. 즉 核家族化나 小家族化는 小集團으로서 生活上의 어떤 事故에 대한 防衛機能의 弱化를 가져오며 主된 生計主가 그 能力의 中斷이나 衰失을 가져올 때에는 家族扶養의 경제적 기반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가족의 扶養 機能의 弱화와 關係해서 人口의 老令化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까지에는 65세 이상 5.0%, 55세 이상은 11.5%까지 增大될 것으로 미루어 社會的 要求問題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經濟成長에서 초래되는 농촌에서 都市에로의 人口移動은 傳統的 地域社會의 相互 扶助機能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러한 變化過程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만 補充的 서어비스의 形態에서 한걸음 나아가 普遍化된 機能的 서어비스로 移行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社會保障制度가 未確立된 狀況에서 向後 15年間은 補充的인 것과 制度的인 것을 相互 補充하는 體系 確立이 要請되고 있으며 制度的인 서어비스 方向을 강화시킴이 바람직한 추세라고 보겠다.

모든 兒童, 靑少年, 婦女, 障礙者 및 老人들의 福祉가 制度的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구나 서어비스의 進進이 活性化 되어야 하겠다.

3. 서어비스의 選擇性

(優先 順位와 서어비스의 選擇적 방향)

社會福祉 서어비스의 우선순위 결정이란 容易한 일이 아니다. 모든 人間은 同等한 가치와 權利를 지니고 있다는 前提下에서는 特定人口 集團에 優先을 결정한다는 것은 社會福祉의 基本倫理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人的, 物的 資源의 影響은 어떤 順위의 결정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優先順位는 對象, 財源, 프로그램과 서어비스 및 方法等 각각의 領域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兒童, 婦女, 障礙者 및 老人의 對象面에서 볼때 福祉的 側面에서는 똑같이 優先적이어야 하겠지만 一般的으로 兒童과 婦女福祉(母子)에 優先順位가 주어지며 점차 障礙者 및 老人에

프로그램面에서는 助長的 豫防的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것은 치료나 事後對策的인 프로그램이나 서어비스보다 물론 效率的이며 또한 財源面에서도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cost-benefit analysis에 의하면 시설중심적 事業의 투자보다는 居宅的 地域社會的 서어비스 제공이 더 經濟的이다라고 評價하고 있음을 볼때 앞으로 이 領域의 프로그램이나 서어비스 개발에 더 優位를 두어야 하겠다.

方法面에서는 社會經濟變動에 따라 일어나는 새로운 問題領域에서 어느 程度 實驗成果를 거둔 pilot project에 優位를 둘 수 있겠다.

또한 專門人力の 活用如何도 우선순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要素라고 보겠다.

서어비스의 選擇的 方向

1. 集約的인 것보다 廣범위한 것을 택한다.
2. 投資와 그 價値를 감안하여 서어비스를 선정한다.
3. 傳統的 福祉事業과 함께 人的資源의 개발이라는 二重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4. 治療的 事業과 함께 豫防的 事業도 병행하도록 한다.
5. 心身障礙者에 대한 事業이나 再活事業에 많은 프로그램을 갖는다.
6. 低所得層을 위한 사업에 重點을 둔다.
7. 施設事業보다 가족이나 地域社會를 中心하는 非施設事業에 傾注한다.
8. 훈련받은 專門人力を 많이 活用토록 한다.
9. 效率性を 높이기 위해서 各部分과 協調하도록 한다.

4. 서어비스의 專門化

兒童 및 靑少年, 障礙者 및 老人福祉, 서어비스의 效率化는 專門組織이나 機構와 아울러 專門職人力の 活用을 통해서 成就될 수 있을 것이다. 종전과 같은 非專門家나 自願指導者단으로서의 앞으로 우리가 直面할 복잡하고도 重要的 이들의 福祉問題를 다루기란 容易한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分野에 對한 專門職 敎育이나 訓練이 體系化 되어야 하겠고 훈련받은 專門人力들을 적극 活用하는 政策이 確立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들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專門家들의 生活保障이나 身分保障이 國家的 次元에서 制度的으로 保障받을 수 있는 體系도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1991년까지에는 社會福祉 分野 人力の 專門化와 그活用の 基盤이 造成될 수 있어야 하겠다.

Ⅶ. 社會福祉 行政 組織

兒童, 婦人, 障得者 및 老人의 福祉서비스의 效率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一定한 行政組織體系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大體로 두가지 조직 體制를 생각할 수 있겠다.

- 1) 社會福祉 서비스를 위한 計劃調整機構와
- 2) 서비스 傳達 體系 機構이다.

처음의 計劃調整組織體系는 上記 對象者들의 諸 서비스의 包括化나 統合化를 위한 계획이나 調整作業을 위해 國務總理 直屬下에 計劃調整局을 설치함이 바람직하겠다. 現在 兒童을 위한 조정기구는 마련되고 있으며 앞으로 障得者나 婦女 및 老人들의 서비스를 위한 計劃이나 調整을 위한 作業도 함께 할 수 있는 行政體系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의 傳達體系인데 우리의 경우 中央이나 道수준의 行政指示傳達體系는 되어 있으나, 市, 郡 單位의 서비스의 第一線的 組織體系는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미국의 경우는 第一線的 組織體로서 카운티 福祉事務所(county welfare office)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第一線的 直接的 서비스의 전달網으로 “福祉事務所”를 갖고 있어 모든 國民의 必要한 도움을 그 지역에서 직접 전달케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地方에 내려갈수록 서비스 體系는 全無한 상태로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都市에로의 빈번한 移動을 통해서 都市 近郊에 저소득층 地帶나 빈민 地域을 形成하는 사태를 빚기도 하는 것이다.

앞으로 1991年 까지는 社會福祉 서비스를 傳達할 수 있는 行政組織體의 확립이 요청되는 것이다.

서비스의 傳達體系를 提起해 보면 첫째로 現行 保健所 전달망과 併合해서 社會福祉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안으로서 保健所를 “保健社會福祉所”로 개칭하여 保健的 서비스 뿐 아니라 社會福祉 서비스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體系이다. 사실 빈곤과 질병은 相關性이 많으므로 보건과 복지 양면의 서비스를 서로 補完할 때 그만큼 서비스의 내용이 充實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美國이나 日本과 같이 獨立的인 福祉 서비스 傳達 體系를 組織化 하는 方案이다. 그 명칭을 “社會福祉所”라 하여 社會福祉 專門人力을 活用하여서 社會福祉事業의 諸法(生活보호법, 兒童福利法, 노인복지법 및 心身障得者福祉法)을 實際로 운영할 수 있는 行政主體를 設置하는 일이다.

이 傳達體系는 保社部 社會課(1972)에서 제기한 “社會福祉센터” 설치방안과도 일치할 수 있겠다. 그 설치 내용에 의하면 복지센터 안에 오락실, 어린이 놀이터, 老人 오락실 및 도서실 등을 설치하고 각종 事業과 敎養, 文化, 클럽活動을 위한 場所提供과 會議場, 결혼식장 사업도 결하기로 되어 있다.

政全般에 걸친 第一線 責任者로서 邑 面の 社會行政을 지휘 統轄하며 모든 社會問題를 조사 파악하여 한 家口의 탈락 가정이나 한 사람의 問題兒도 생기지 않도록 한다⁷⁾. 라고 되어 있는 바 社會福祉所의 機能을 잘 說明하고 있다.

그러므로 向後 15년간 1991년 까지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위치한 地域에까지 年次的으로 併設的으로나 獨立的으로 社會福祉 傳達體系가 確立되어야 하겠다.

Ⅷ. 社會福祉 人力

1. 現況과 問題點

現在 우리에게는 社會福祉 人力養成 및 充員計劃이 尠혀 樹立되어 있지 못하다.

社會福祉 人力에서 社會事業家와 保姆人力에 對한 專門人으로서의 認識이 尠혀 고려되어 있지 못하다.

法制面에서도 社會事業家の 資格 基準이 明確히 區分되어 있지 못하다.

教育面에서 文教部 산하 大學의 四年課程을 畢은 者나, 保社部 산하 社會福祉 研修院에서 高校卒業後 一年未滿의 研修를 받아도 꼭 같은 資格이 부여되고 있다.

實際面에서 社會福祉 機關이나 施設에 從事만 해도 社會事業家로 호칭하고 있어 社會事業家の 專門性이 尠혀 고려 되지 않고 있다.

保姆도 大學의 水準이나 專門學校 水準의 養成 制度가 있음에도 教育이나 訓練과 關係없이 그 地位에 있으며 正規 保姆로서 看做되는 實情이다.

一般社會에서도 社會事業을 慈善事業이나 博愛事業으로 混同 專門職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2. 政策目標

- 1) 社會福祉 서비스는 專門職 人力에 依해 제공한다.
- 2) 社會福祉 人力의 水準別 養成體系를 確立한다.
- 3) 法上에 專門職, 準專門職, 不問티어(volunteer) 등의 資格規準을 明確히 한다.
- 4) 訓練된 人力資源을 効率的으로 活用한다.
- 5) 社會福祉 人力需給의 効率化를 期한다.

3. 政策手段

- 1) 兒童, 老人, 心身障礙 및 婦女福祉分野 서비스에서는 訓練받은 專門 社會事業家나

7) 保社部, "社會開發" 1974, p. 481.

2) 社會福祉 人力은 社會福祉 서비스의 多樣性에 비추어 大學水準 高等學校以上 水準 또는 長期的 經驗水準 等を 고려하는 人力 養成體系를 確立한다.

3) 社會福祉事業法, 兒童福利法, 生活保護法, 또는 앞으로 發効될 心身障礙者福祉法, 老人福祉法 等に 規定된 또는 規定될 社會福祉 要員의 資格基準이나 要件을 體系化함과 아울러 明確化한다.

4) 現在에도 一年에 正規大學에서 近 400名에 가까운 훈련된 人力이 배출되나 社會的地位나 보수 등의 理由로 이 分野로 進出하지 않고 있는바 이들 人力에 對한 効率的 活用計劃方案을 모색한다.

5) 現在의 社會福祉 教育이나 訓練이 人力의 需給과 關係없이 推進되고 있으므로 이에 對한 全國的인 次元에서의 供給계획과 그 實踐이 要請되고 있다.

要는 1991年 까지는 社會事業, 保姆 및 홈 헬퍼(home helper)職이 專門職으로 간주되며 水準別(專門家, 準專門家, 補助者)에 따르는 專門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表 (12) 社會福祉要員需給計劃(案)

구	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수	사회복지 인력수	7,949	8,330	8,816	9,412	10,170	11,084	12,174	13,464	15,050	16,672	19,230
	증가수	381	486	596	758	914	1,090	1,290	1,588	1,920	2,258	2,324
	부족증원	279	189	164	141	—	59	—	—	—	26	60
요	되	396	416	440	470	505	550	605	670	450	498	576
	계	1,656	1,091	1,200	1,369	1,419	1,699	1,895	2,258	2,370	2,782	2,940
공	대학전공학과졸업자	387	387	404	462	462	472	567	567	576	585	585
	단기양성	250	300	340	435	580	715	800	1,225	1,350	1,720	1,791
	유류유자격자	230	250	315	472	318	512	528	466	420	417	564
급	계	867	927	1,059	1,369	1,360	1,699	1,895	2,258	2,346	2,722	2,940

參考資料：保社部, “社會開發”, 1974.

IX. 結

社會福祉 서비스의 展望

社會經濟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모든 국민의 生活은 向上되어 가고 있으나 특별히 兒童 및 靑少年, 婦女子, 心身障礙者 및 노인들에게는 社會生活이나 社會適應面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복지대책의 開發이나 強化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앞으로 1991년 까지는 그 變化의 度는 急速化될 것이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대책을 展望하여 總合的 서비스 體系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앞에서 제기된 問題의 現況과 그 해결을 위한 目標과 手段 및 서비스 傳達에 關

한 적극적인 政策的 實施가 展望되는 것이다.

1. 兒童 및 靑少年, 婦女子, 障礙者 및 老人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法上的 福祉權이 保障되어야 한다. (社會福祉 諸法制의 改訂이나 通過)
2. 對象者들의 새로운 變化 要求를 充足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包括的인 서비스를 개발한다.
3. 지금까지의 事後對策的 救護的 서비스에서 보다 豫防的이며 적극적인 福祉對策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
4. 制限的, 補充的, 諸般 서비스 범주에서 보다 一般化 될 수 있는 制度的 장치나 서비스를 개발한다.
5. 서비스의 內容面에서 勿論 지금까지의 施設中心의 事業에서 앞으로는 居宅的, 地 社會的 보호를 통한 社會的 서비스 體系를 重點的으로 개발한다.
6. 現金給附나 물질위주의 서비스 樣態에서 人格的 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專門相 的 서비스를 共히 개발한다.
7. 上記의 다양한 포괄적 서비스나 豫防的, 治療的 서비스, 補充的, 制度的 서비스, 居宅的, 치료적 커뮤니티 케어의 서비스 등을 單獨的으로 다루지 말고 統合的으로 실시 나간다.
8. 이들 대상 즉 아동이나 청소년에서 신체장애자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가발전에 이 지할 수 있는 人力이므로 이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한다.
9. 社會福祉서비스는 일정한 서비스 傳達組織體를 확립하여 이를 통해서 다양하고 統合的인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提供한다.
10. 모든 서비스를 專門的 人力의 活用을 통해서 提供한다.

參 考 文 獻

1. Kahn, "Theory & Practice of Social Planning," 1969
2. Morris & Binstock, "Feasible Planning for Social Change," 1970
3. Trecker, "Social Work Administration," 1971
4. 경제기획원, "주요 통계", 1972
5. 보건사회부, "사회개발장기계획" 제 1집, 제 2집.
6.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 인구의 추계", 1975